

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건축법에 따라 배치되는 현장관리인 배치 제도 등 운영 지침 시달

1. 평소 건축 관련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, 「건축법」(법률 제14016호, '16.2.3.) 제24조 등에 대한 운영 지침을 알려드립니다.

2. 「건축법」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3. 이 기준을 적용할 때,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축주가 아닌 건설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라면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본문 중 괄호 안의 사항이나 단서에 해당되어 제외되는 경우 또한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* 건축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에서도 동일하게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본문 중 괄호 안의 사항이나 단서에 해당되어 제외되는 경우 제외

4.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상기 현장관리인의 등급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, 건축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자르 하여야 할 것입니다.

5. 아울러, 건축법 제13조의2,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의 기준은 '17.2.4부터 시행되는 바 시행일 이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(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)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.

* 시·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시·군·구 등 기초자치단체 및 허가 관련 업무 유관기관 등에 전달하여 동 지침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끝.